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7. 12. 22. (금) 14시**
- 장 소 : 서울YWCA회관 4층 강당**
- 주 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7. 12. 22.(금) 14시
- 장 소 : 서울YWCA회관 4층 강당
- 순 서

사회 :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간	프로그램	
13:30 – 14:00	등록 및 접수	
14:00 – 14:10	개회사	김천주 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14:10 – 14:40	발제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14:40 – 15:50	토론자	김남홍 변호사(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센터) 윤철한 팀장(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영주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정배 서기관(국회 입법조사처) 남동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15:50 – 16:30	질의응답	

[발제]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개정방향

고영석 교수(선문대학교)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개정방안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I. 단체소송의 정의 및 연혁

1. 단체소송의 의의 및 구별개념

(1) 단체소송의 의의

- 단체소송이라 함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제소권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여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
- 단체소송은 현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할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의미의 단체소송(부자위청구소송)과 차이가 있음

(2) 구별개념

1) 집단적 피해구제제도

-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소송제도와 조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로는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 등이 있으며, 집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제도가 있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로는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및 약관규제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있음
- 이러한 소송 및 조정제도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피해구제제도)에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 단체소송(피해예방제도)과는 차이가 있음

2)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사업자에게 위법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 이러한 시정조치는 단체소송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첫째, 시정조치는 행정행위(행정명령)에 해당하지만, 단체소송은 사적 소송에 해당함
 - 둘째,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만을 전제로 하며,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은 그 요건이 아님. 그러나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3) 사인에 의한 금지청구권

- 사인에 의한 금지청구는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및 저작권법상 금지청구가 있음
- 이러한 사인에 의한 금지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단체소송과 차이가 있음
 - 첫째,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은 재판외 또는 재판상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금지청구권 역시 재판외 또는 재판상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단체소송은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음
 - 둘째, 금지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모두 피해자에 국한되지만, 단체소송은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재소권을 가진 단체가 제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를 공익적 소송이라고 함

2. 단체소송에 관한 소비자기본법의 연혁

(1) 단체소송제도의 도입(2006년)

- 2006년 구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단체소송을 처음 도입함
- 2006년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2007년 3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됨

(2) 제소권자의 확대(2016년)

- 201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함

3. 단체소송의 제기현황

(1) 하나로텔레콤 사건(각하)

- 소비자의 개인정보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약관에 대한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진행도중에 해당 약관을 변경하여 각하됨.

(2) 이동통신 3사 사건(기각)

- 이동통신이용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처리하였음. 이후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음

(3) 분실된 대중교통사건(기각)

- 대중교통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잔액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이유로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처리하였음. 이후 원고인 소비

자단체는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음

4. 주요국의 단체소송

(1) 독일의 부자위소송법상 단체소송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가를 받은 소비자단체등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제도

(2)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상 단체소송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제도

II.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제·규정의 문제점

1. 제소단체의 요건

- 지정방식(한국소비자원 및 경제단체)과 요건충족방식(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병행
- 과도한 제소단체 요건으로 인해 소 제기시 원고적격의 증명문제 발생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보다 원고적격의 문제가 소송 허가 또는 분안소송에서 더 쟁점

2.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한 제한성

-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그러나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결과, 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3. 청구내용의 제한성

-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조치는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로 한정
- 그 결과, 피해물품의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제조 또는 판매만의 금지 또는 중지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미 소비자에게 공급된 피해물품의 수거 등을 청구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할 수 없음

4. 소비자피해에 대한 모호성

-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으로 한정한 결과 정신적 손해(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단체소송을 제기 할 수 없음
- 또한 소제기 요건과 소송허가요건에 있어 상이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함

5. 소송허가제도

-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피해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소송허가제도를 둘으로 인해 조속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함
-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의 경우 소송허가제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 및 일본의 단체소송 역시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6. 재판관할권

- 재판관할권에 대해 피고의 방어권 보장만을 중시한 결과, 단체소송의 제기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실적 곤란성이 존재함.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위법행위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내에 사무소 등이 없는 경우에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며, 불법행위의 경우에 재판관할권을 불법행위지로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법 및 국제사법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음

7. 피해소비자의 요청권

-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는 제소권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제소권이 없는 소비자단체 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요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 단체소송이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점과 공익적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소권이 없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소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III.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1. 단체소송

(1) 개정안의 제시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현행	제4절 단체소송	개정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제소단체”라 한다)는 법원에 그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하 “금지·중지등”이라 한다)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제소단체”라 한다)는 법원에 그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하 “금지·중지등”이라 한다)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제소단체”라 한다)는 법원에 그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하 “금지·중지등”이라 한다)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제소단체”라 한다)는 법원에 그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하 “금지·중지등”이라 한다)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p>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p> <p>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p> <p>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p> <p>2. 제33조에 따른 설립된 한국소비자원</p> <p>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p> <p>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p> <p>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p> <p>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p> <p>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p> <p>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p>	<p>할 수 있다.</p> <p>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p> <p>나. <u><삭제></u></p> <p>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p> <p><u>1의2.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u></p> <p>2. 제33조에 따른 설립된 한국소비자원</p> <p>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p> <p>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p> <p>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p> <p>다. <u><삭제></u></p> <p>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p>
--	---

(2) 개정이유

1) 문제점

-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행위로 구현하고 있음.
 - .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

- 그러나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동법 제20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대상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계 속되는 경우”이지만, 단체소송의 허가요건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임
- 단체소송의 대상요건과 소송허가 요건이 상이하여 소비자피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함.
-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대상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계 속되는 경우”임
- 동법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으로 구한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손해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그 결과, 개인정보침해 등 정신적 손해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중지 또는 금지에 한정됨.
- 그 결과, 이미 소비자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의해 성이 있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의 현실적 발생을 예방 할 수 없음
-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중 일정요건¹⁾을 충족한 단체, 한국소비자원,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 시행령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범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일부 경제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요건²⁾을 충족한 단체임

-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그 핵심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임
- 그러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단체의 요건에 정회원의 요건을 추가함으로 인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아닌 정회원의 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의 문제로 다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상 공정위 등록요건 및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등록요건에 일정한 회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이라는 요건을 통해 제소단체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정회원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 소비자단체의 협의회에 대한 제소권 인정의 필요성

-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한국소비자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단체소송의 원고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개정내용

- 청구대상의 확대

- 단체소송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위법행위로 확대함

- 청구대상의 명확화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여 단체소송이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함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

2. 3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자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소비자의 모든 피해로 확대
 - . 소비자의 피해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 피해의 예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합
- 청구내용의 확대
 - .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저지하여 소비자 피해의 현실화 내지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만으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 이외에 위해물을 의 수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
- 제소단체 요건의 현실화 및 제소단체 확대
 - . 단체소송의 핵심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전부 및 소비자 피해의 발생가능성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소단체 요건을 삭제함
- . 소비자단체 협의체 역시 한국소비자원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단체로 추가함

2. 사전 금지·중지등의 청구

(1) 개정안의 제시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생략>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생략>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의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제70조의2(사전 금지·중지등의 청구) 제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중지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개정이유

1)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사전허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허가가 있다는 점은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에서 이를 기각할 경우에 사전허가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전허가방식을 폐지함. 다만,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가 그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함

2) 개정내용

-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법행위를 시정조치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지 등 또는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과 같이 14일로 정함

3.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1) 개정안의 제시

현행		개정안
<p>제70조의3(단체소송의 제기) 제소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소단체를 증명하는 서류</p> <p>2. 제소단체가 제70조의2에 따라 요구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제7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p>		

(2) 개정이유

1) 문제점

- 소송허가와 본안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함

2) 개정내용

- 제소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소장과 제소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의 의견서로 정합
- 다만, 사업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협행과 같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요구

(1) 개정안의 제시

제70조의4(단체소송의 제기 요구)	개정안
<p>① 소비자단체 또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1.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신청서</p> <p>2. 사업자의 행위가 제7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②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 제기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는 단체소송의 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추가자료 등을 소비자단체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③ 소비자단체등이 제2항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 제기요구를 받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는 그 요구를 받은 날(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 등이 제출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소송의 제기여부에 대해 소비자단체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연장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p>	

(2) 개정이유

- 1) 문제점
 - 현행법상 제소권자는 일정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제소권자에게는 피해소비자등의 제소요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단체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2) 개정내용
 - 첫째, 제소권을 갖지 못한 소비자단체 또는 일정 수 이상(안에서는 50명 이상으로 정함)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에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소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소권이 없는 소비자단체가 제소권을 갖은 단체를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둘째, 제소요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 제소요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신청서와 사업자의 행위가 단체소송의 제소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으로 규정함
 - 셋째, 제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자료 요구권 신설 및 추가자료 미제출시 소 제기 요청 거부
 - 소비자단체등의 제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신청소비자단체 등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소 제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되어야 단체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도록 할 경우에 폐소의 가능성이 높음
 - 넷째, 제소 여부에 대한 결과 통지의무
 -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소 제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소 여부에 대해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
 - 통지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추가자료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로 정함
 - 통지기간의 연장을 규정하여 상기의 기간내에 제소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함

5. 전속관할

(1) 개정안의 제시

현행	개정안
<p>제71조(전속관할) 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u>불법행위지</u>에 따라 정한다.</p>	<p>제71조(전속관할) 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 또는 <u>불법행위지</u>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u>불법행위지</u>에 따라 정한다.</p>

(2) 개정이유

1) 문제점

- 현행 단체소송은 피고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방어권만을 보장하는 것은 단체소송이 소비자피해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간과한 것임
-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인 불법행위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전속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를 추가함

3) 참조 입법례

- ①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 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일본 소비자계약법

(管轄)

제43조 差止請求に係る訴訟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五条（第五号に係る部分を除く。）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よる差止請求に係る訴えは、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があつた地を管轄する裁判所にも提起することがで
きる。

- 一 第十二条 同条に規定する事業者等の行為
- 二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第三十条第一項 同項に規定する事業者の行為
- 三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五十八条の十八から第五十八条の二十四まで 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當該差止請求に係る相手方で
ある販売業者、役務提供事業者、統括者、勧誘者、一般連鎖販売業者、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又は
購入業者（同法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二項の規定による差止請求に係る訴えにあつては、勧誘者）の行為
- 四 食品表示法第十二条 同条に規定する食品関連事業者の行為

6. 소송대리인의 선임(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여야 한다.	〈좌동〉

7. 소송허가의 신청

(1) 개정안의 제시

현행	개정안
<p>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p>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험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p>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하고 할 수 있다.</p>	<p>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의 범위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p>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험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p>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하고 할 수 있다.</p>

(2) 개정이유

1) 문제점

- 현행법상 단체소송은 사전 소송허가신청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소송불허가 사유는 각하요건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바로 본안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2) 개정내용
 - 소송허가에 관한 동 규정을 삭제함

3) 참조입법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나 블로그의 등록만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일본 소비자계약법
- 第十二条　過格消費者団体は、事業者、受託者等又は事業者の代理人若しくは事業者の代理若しくは受託者等の代理人（以下「事業者等」と総称する。）が、消費者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消費者に対して第四条第一項までに規定する行為（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行為にあっては、同項ただし書の場合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事業者等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民法及び商法以外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れば当該行為を理由として当該消費者契約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8. 확정판결의 공개 및 효력

(1) 개정안의 제시

현행	개정안
<p>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p> <p>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p>	<p>제75조(확정판결의 공개 및 효력) 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단체소송을 제기한 제소단체는 판결의 주된 내용, 사업자의 명칭 등 충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원하지 않은 의사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p> <p>②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제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p> <p>2. 기각판결이 원소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p>

(2) 개정이유

1)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해 중복제소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단체소송은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단체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개정내용

-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제소 단체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

- 판결이 청구기각인 경우에 피고의 선택에 따라 그 판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9.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1) 개정안의 제시

현행	개정안
<p>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p> <p>②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p> <p>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p> <p>② <u>제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2) 개정이유

1) 필요성

-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에 대해 소송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소송허가와 본안소송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앞에서 제시하였으며, 소송허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함

2) 개정내용

- 보전처분의 신청시기를 단체소송제기 시점으로 정함

10. 제소단체에 대한 지원

(1) 개정안의 제시

제76조의2(제소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소단체가 단체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개정이유

1) 필요성

-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감시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함
-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소송비용 등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여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는 제소단체에 그 책임 지원은 당연한 것임
- 다만, 단체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소단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개정내용

- 제소단체의 소비자단체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지원기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

【별첨】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소비자단체소송 부분)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현행	제4절 단체소송	개정안
<p>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제소단체”라 한다)는 법원에 그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하 “금지·중지등”이라 한다)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정관에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p>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제소단체”라 한다)는 법원에 그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하 “금지·중지등”이라 한다)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정관에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중央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p>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제소단체”라 한다)는 법원에 그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하 “금지·중지등”이라 한다)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삭제〉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p>제74조(소송히가요건 등) ①<생략></p> <p>1. ~ 2. <생략></p> <p>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을</p> <p><신설></p>	<p>다. <삭제></p> <p>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p> <p>제70조의2(사전 금지·중지등의 청구) 제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중지등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70조의3(단체소송의 제기) 제소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소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소단체가 제70조의2에 따라 요구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제7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p>제70조의4(단체소송의 제기 요구) ① 소비자단체 또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신청서 2. 사업자의 행위가 제7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p>②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 제기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는 단체소송의 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추가자료 등을 소비자단체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③ 소비자단체등이 제2항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 제기요구를 받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는 그 요구를 받은 날(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 등이 제출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소송의 제기여부에 대해 소비자단체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연장</p> <p><신설></p>
---	---

	<p>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1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 <u>또는 불법 행위지의 지방법원 본원</u>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 <u>또는 불법 행위지에</u> 따라 정한다.</p>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p>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의 침해 행위의 범위 <u>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제기 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 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p>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p><삭제> 제1항 제3호는 제70조의2로 이동</p>

<p>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가진 청서의 기재사항에 흡결이 없을 것</p> <p>3. 소재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 단체소송을 하기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p>	<p>제75조(확정판결의 공개 및 효력) 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정거래 위원회 및 단체소송을 제기한 제소단체는 판결의 주된 내용, 사업자의 명칭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p> <p>②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제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위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소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p>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p> <p>② 제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의2(제소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소단체가 단체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토론 1]

토 론

김남웅 변호사(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센터)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개정방안

- 단체소송실무의 관점에서 본 개선방안-

김남홍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1. 스마트카드 사건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1) 201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소비자연맹과 힘을 모아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통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삼자는 취지로 그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문제제기가 되었던 상담사례중에 소비자위 권익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추리고 그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많고 그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안에 소비자공익소송센터를 설립한 후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소비자연맹에서 침해사례를 모아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법학회 교수님들이 법리적으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송은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채택하여 2015년 12월에 처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례 중 하나가 제가 담당한 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2) 선불식 교통카드를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구입을 하는 경우 청소년할인이나 어린이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지 10일 이내에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지속적인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카드에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환불받

지 못하도록 약관에 정해두고서 회사는 실제로 전혀 이를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실제로 지난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은 무려 650억원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뜻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어른이 어린이나 청소년카드로 이용하는 경우 지하철의 경우 30배의 이용대금을 물게 하고 있으며, 기존의 카드번호만 있으면 그 카드가 어느 장소에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였으나, 스마트카드측의 주장으로는 전국에 있는 편의점 등에 있는 단말기를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책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4) 이에 저희들은 스마트카드 사의 주장대로 환불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힘든 것인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카드가 발행하는 티머니 카드의 정보처리 및 환불시스템을 확인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에서 스마트카드 사에 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스마트카드사는 영업비밀임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5)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단체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6조 제1항 참조).³⁾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다만 증거의 편재가 있어서 사실상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그러

3)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한 증거를 보유한 자에게 신청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존재하나, 그 증거를 보유한 자가 제출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6) 단체소송은 공익소송이고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침해가 반복적이고 현존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소송을 속성상 기업 내부가 그 주요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또한, 단체소송을 통하여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장래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제도나 현재의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돌려오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사소송법상 엄격한 입증책임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침해가 상당히 있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법리적, 경제적 사유 등), 이를 소비자권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이를 소비자를 위하여 권리구제를 대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다분히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이며 그에 따라 대립하는 이익주체간의 소송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7) 특히 스마트카드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주요한 핵심 쟁점이 스마트 카드사의 결제시스템 및 분실에 따른 결제금지 시스템이 소비자의 권리율 위하여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카드 사가 그러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입증책임의 불이익을 소비자측에게 물어서 패소판결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이러한 증거편재현상에 따른 입증책임의 문제

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체소송에서 시급한 문제는 관련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내부의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타 개정안과 관련하여

(1)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항목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후략)”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경우 ‘다수’라는 개념이 불분명하여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인원이 침해를 입었다고 해야 ‘다수’의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수의’라는 항목은 현행과 같이 단순히 ‘소비자’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요구 항목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상당히 획기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서 단체소송을 요구하는 대상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로 한정한 것과 단체소송요구를 받은 지 30일 만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단체소송을 진행해 보면, 실제로 그 소송을 제기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요하는 것이고, 게다가 이러한 것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법리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입증계획 및 소송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단체소송을 위하여 한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상대방 서면과 그에 따른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이는 상당히 촉박한 기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상근변호사가 존재하는 소비자원이나 기타 단체만 가능한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소비자단체들의 단체소송진행을 사실상 막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소송진행여부에 관한 1차적인 심사권한을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협의체에 부과하여 단체소송의 진행에 관한 상급단체로서 여겨지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결 론

이번 개정안에서 단체소송의 대상을 확대한 규정(개정안 제70조), 소송허가제를 없앤 점, 관할을 확대한 점(개정안 제71조), 제소단체에 대한 지원(개정안 제76조의2)규정을 신설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업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소권한 없는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요구권한은 제소단체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립된 후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2]

토 론

윤철안 팀장(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바람직한 소비자 단체소송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1.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 현황

- 소비자단체소송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1건만 제기되었으며, 이 역시도 사업자가 소송 도중에 약관을 자진 시정해 소송을 취하함. 2016년 이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단체소송 등 총 5건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임
-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요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 내용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권리침해의 금지·중지
단체 요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관 '소비자의 권리증진' 명시 정회원수 1천 명 이상 등록 후 3년 경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관 '정보주체의 권리증진' 명시 정회원수 1천 명 이상 등록 후 3년 경과
단체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50인 이상 요청 정관 '소비자의 권리증진'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활동실적 상시 구성원 수가 5천 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등록	100명 이상 요청 정관 '개인정보 보호'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활동실적 상시 구성원 수가 5천 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등록
소 제기	피고의 주된 사무소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송대리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강제주의
소송허가	소송허가신청서 소제기단체 요건 소명 자료 침해행위 금지·중지 요청 서면 및 사업자 의견서	소송허가신청서 소제기단체 요건 소명자료 조정 거부 또는 조정결과 불수락 증명 서류
확정판결 효력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소비자단체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 2008년 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 6백여만 명의 고객 정보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국 1천여 곳의 텔레마케팅 업체들에 불법,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 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했다는 결과를 발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고객 정보를 SC제일은행의 제휴 신용카드 가입 판촉활동을 위해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준 것에 대해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복구 등 조처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함
- 하나로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무관한 마케팅 행위를 취급위탁 명목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지속했고,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함

2)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 소송제기 2008. 7. 24
-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정보 무단유출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함
- 하나로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하여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함

3) 소송허가

- 소송허가 2008.10.14.
-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의 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허가함

4) 소송취하

- 소송취하 2009.01.07.
- 경실련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으로 고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해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송을 취하함

3.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 낮은 소송 실익

- 소비자피해에 대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으로 한정함
- 행위의 금지 중지 한정하다 보니 행위로 인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2) 침해 예방 한계

- 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로 한정하고 있음
- 침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의 예방적 소송 가능 여부가 불명확함

3) 소송요건과 소송허가요건 충돌

- 소송허가 요건 -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4) 까다로운(형식적인) 소제기 요건

- 구성원 수, 정관 명시 등 과도한 제소단체 요건으로 인해 소 제기 시 원고적격의 증명문제 발생

- 본안소송에서 위법행위에 관한 판단보다 원고적격의 문제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음

주 문

이 법원 2008가합14641 소비자단체소송 사건에 관하여,

1. 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 대하여는 소송을 허가하고,
2. 원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에 대하여는 소송을 불허가한다.

4. 소비자단체소송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소송대상 범위

- 개정안은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해 소송대상에 침해 예방을 명확히 규정함
- 개정안은 소비자의 침해되는 권리가 생명, 신체, 재산권에 한정될 이유가 없고, 소비자 권리침해를 예방적 방지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함

2)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 개정안은 제소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이는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위상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동의함
- 개정안의 단체 구성원 수 요건도 불필요한 원고적격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함. 구성원 수 외에 정관에 ‘소비자 권리증진’ 명시 삭제도 고려되어야 함

단체 구성원수 확인서

- 단체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회원수 : 12,906명(2008년 7월 17일 오후6시 현재)

The screenshot shows the HumanSoftware MRM [Ver. 2.3.2.0] application window. The main area displays a grid of member information with columns for Name, Birth Year, Gender, Membership Type, Application Date, First Enrollment Date, Department, and Zip Code. The status bar at the bottom right indicates the date and time: (capture, 2008.07.17 18:00).

성명	생년...	회...	별명...	회원구분	가입일	최종납부...	납부방법	집주소
박현우	1961-07...	회원여...		일반회원	2003-06-27	2007-11	CMS	전남 목포시 육암동
김영록	1967-11...	회원여...		일반회원	2006-09-05	2008-07	CMS	전남 목포시 용당2동
강성도	1956-05...	회원여...		후원회원	2003-06-27	2006-12	CMS	
LG화학(주)	정규			후원회원	2007-12-13	2007-12	현금	전남 여수시 화치동
KT광역재...	정규			후원회원	2003-06-03		은행이체	기타
KT	정규			후원회원	2003-07-23			
GS칼텍스(...	정규			후원회원	2007-12-11	2007-12	현금	전남 여수시 공호동
속연뱅크...	정규			후원회원	2006-12-13	2006-09	기타	경북 경주시 동부동
황희연	2008-04...	정규		일반회원	2002-05-13	2007-10	GRO	충북 청원군 남이면
황희연	정규			일반회원	2007-12-10	2008-06	은행이체	
황희연	정규			일반회원	1993-11-01		기타	충북 청원군 남이면
황희성	정규			일반회원	2004-12-23	2007-01	GIRO	전북 군산시 경강동
황희선	정규			일반회원	2000-01-01		기타	군산시 문화동 890-7
황희석	1964-11...	정규		일반회원	2003-06-27	2008-07	CMS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황희한	1962-03...	정규		일반회원	2002-05-13		GRO	
황희식	1964-06...	정규		일반회원	2007-05-21	2007-06	CMS	
황한수	1947-09...	정규		일반회원	2003-06-27	2008-06	CMS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황호정	1951-04...	정규		일반회원	2007-03-13	2008-06	CMS	강원 태백시 황지동
황호철	1947-06...	정규		일반회원	2008-03-04		CMS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강동
황호연	1970-09...	정규		일반회원	2008-03-03	2008-06	CM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황호숙	정규			일반회원	2000-01-01		기타	전북 익산시 남중 1가
황호선	정규			일반회원	2002-02-20	2007-01	GIRO	
황호규	1963-03...	정규		일반회원	2006-07-07	2008-07	CMS	
황혜현	정규			일반회원	1995-05-09		기타	
황혜승	1973-07...	정규		일반회원	2004-02-16	2008-07	CMS	부산 북구 화명동

목록갯수: 12,906

위와 같이 '경실련 규약' 제5조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회원의 자격 및 종류에 근거해 회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철규 김성남 김용채 이근식

3)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요구

-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50명 이상의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협의체에 단체소송 제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별소비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더욱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함
- 다만,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과 민간기관(소비자단체 협의체)에 법률로 소송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어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50명 이상의 소비자 외에 소비자단체 기준이 불명확하고, 소송제기 요구가 아닌 소송요건을 완화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또한, 민간기관인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잣은 소송제기 요구에 대한 대비책, 거부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 소송제기 요구 검토 및 소송제기 시 수반되는 비용, 소송 패소 시 부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4) 전속관할

- 개정안은 전속관할 법원을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외에 불법행위지를 추가해 원고(제소단체)의 소송제기권을 조금이나마 보장하는 의미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관되게 약관으로 전속관할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무효로 처리함. 따라서 원고(제소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지역)가 있는 곳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5) 소송허가

- 발제자는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 본안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제안하고 있음
- 다만, 소비자단체소송의 사회적 의미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때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차별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집단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소송 남발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 확보가 관건임

6) 제소단체 지원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소송 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의 용도나 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로 명확히 예 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단체 성격이나 원칙에 따라 보조금(소송비용)이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토론 3]

토 론

함영주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문

함영주 교수 (중앙대학교)

(1) 개정안에 대한 개별 의견

1) 용어의 문제

현 소비자 기본법 제70조 이하를 포함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반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단체소송 조항을 처음 만들 때 민사소송법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소송은 절차로서 process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소(訴)의 형태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라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모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소송

현재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소송은 잘 알다시피 장래이행의 소로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에는 정기행위나, 계속·반복적 이행 청구, 미리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안 되고 단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만이 허용(물론 발표자의 개정안에는 위해물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환 기타 소비자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역시 금지, 중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래이행의 소와 이 부분을 결합하면 장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이 되어서도 사업자가 위법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거나 미리 중지·방지 의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사업자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래이행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면에서 민사소송의 특수형태 또는 예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또 하나의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는 장래이행의 소까지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요?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 사건을 보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는 행정

기관의 과징금이나 행정지도, 비판적 여론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현란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별 실익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이나 범위에 손해배상청구를 넣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 시점에,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이행청구에 대한 현재이행의 소가 인정되고 나서 그것이 부족하여 특별한 경우에 장래이행청구도 허용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넣는 것이 적절한지요? 장래이행의 소는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포함된 이후에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도입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70조의 단체소송의 대상과 제74조의 소송허가요건에서 침해의 범위가 다른 것(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까지 포함된 경우)은 입법기술적으로 그리 잘한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제74조의 소송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직접적 침해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허가신청을 하면서 앞으로 침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추가되어 있으면 소송허가단계를 통과할 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제가 소비자단체소송에 소송허가라는 단계가 들어간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단체소송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Verbandsklage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체로 정관의 목적이 단체소송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면 바로 단체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기본법 제74조의 단체소송의 허가요건이나 ‘허가’라는 표현은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은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허가’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모든 피해자들의 소송위임을 받지 않아도 법원의 인증(certification)절차에서 대표자로서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가능한 특이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비자기본법 제70조가 단체소송의 당사자격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여 사실상 단체소송의 요건을 충족가리 어렵게 만든 후, 다시 제73조, 제74조에 소송허가신청과 소송허가요건을 두어 또다시 당사자격의 제한을 두는 것은 세계의 집단소송 입법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 아닌가 합니다. 혹 이러한 형태로 입법이 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예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의 입법이 된 이유나 상황, 입법에 관여한 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세한 단체소송의 요건에 매달리기 전에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복층구조의 소제기 요건을 만든 부분이 시스템을 더욱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집단소송 입법에 관한 한, 소비자 단체나 피해자 개인들은 전쟁에 지고서 전투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3)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당사자 적격 인정 부분

발표문을 보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소송과 조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조정은 조정과 재판의 구분도 혼동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협의회가 조정기구로써 소비자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소비자단체소송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세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시스템이라는 견해도 집단분쟁과 조정이 얼마나 잘 맞지 않는 결합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나온 성급한 제도화가 아닌가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조정결정(제60조)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조정위원회 출석 과반수로 의결(제63조)한다든지, 조정결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봐도 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67조)을 갖는다든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제69조)들은 조정의 실체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활히 하는 조정(mediation)이 아니라 재판(adjudication)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외견상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소비자단체의 연합회이거나 대표자협의회가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또는 전국경제인연합체처럼 개별 회사에서 출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어떤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든 소비자단체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체소송의 대상에 명시되거나 단체소송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표자의 견해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한국소비자원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단체소송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데 특히 단체 일반의 성격이나 성질이 아니라 ‘단체소송의 수행능력(이른바 민사소송상의 소송능력과 당

사자적격을 포함한 개념)'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정안으로 제시된 경우 단체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하는 이러한 역량이 충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구대상의 확대에 관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 이외에 위해 물품의 수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한다고 하였는데, 법해석의 방법으로 금지·중지의 범위 내에 위해물품의 수거 등의 행위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요?

소제기 단체의 확대에 관한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관한 제70조에서 단체의 정회원 수 1천명,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등과 같이 단체소송의 수행과 별 관련성이 없는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요건들은 삭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송행위는 일반 계약보다 더욱 어려운 난이도의 행위로 단체 구성원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 구성원 중에 소수이더라도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느냐는 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 집단분쟁수행의 역량에 왜 쓸데없이 곁모습만 따지는 양적 지표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4) 제기된 단체소송의 허가요건에 대한 문제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에서나 있을 요건을 별 생각 없이 단체소송에 도입한 것으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금지·중지만을 인정한 단체소송의 대상 역시 소송의 실익은 없고 소제기의 동인만 없애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전 범위의 민사상의 청구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지도나 행정에 의한 압박, 여론의 압박으로도 금지나 중지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사업자가 회피하려고 한다면 소비자 단체소송에 의하여 금지 또는 중지 판결이 난 경우에도 소송물의 범위만 벗어나게 하면 얼마든지 소송의 목적달성을 무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생산중단 판결이 난 경우 제품의 이름이나 내용물을 약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인명으로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5) 단체소송을 하기 14일 전에 위법행위의 금지나 중지 요구에 대하여

이 부분은 법규정에 없으면 못하는 것인지요? 소비자단체에서 단체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업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단체소송의 소가 제기

되는 것을 우려할 부분이 있는지요?

소비자단체 중에 사업자에게 위법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요구하면 바로 시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몰래 소비자단체소송을 시작할 단체가 있는지와 그 실익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주장하시는 단체소송의 소제기 14일 전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위법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을 요건으로 두는 경우 사업자들은 이 기간을 위법행위를 내놓고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소비자단체에게 걸림돌만 되는 이러한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단체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발표자께서 추가를 하고자 하는 제70조의 3은 소비자기본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단체소송을 시작하려면 낼 수밖에 없는 필수자료로 민사소송법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습니다(물론 소비자기본법에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유일한 선례라고 할 수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준용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추가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제70조의 4에 대한 규정 역시 동일한 의견입니다.

7) 불법행위지의 관할 추가 문제

소비자기본법 제71조의 전속관할 부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유래한 규정입니다. 그 때 이 전속관할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강조점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과 같은 작은 법원에서는 안되고 지방법원 본원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이를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불법행위지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은 허용하지 않고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만을 허용하는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추가로 허용한다고 하여 무슨 실익이 있는지요?

일본 소비자계약법 제43조는 차지청구소송에서 재산권과 관련된 재판적에 관한 일본민사소송법 제5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부당경품제공이나 부당표시를 한 행위지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재판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개정을 주장하시는 제71조의 전속관할을 불법행위지로 확대하자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신지요?

8) 소송허가의 신청 부분

앞 부분에서 서술하였습니다.

9) 중복소송의 문제

소비자 기본법 제75조는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에 관한 규정으로 중복소송과 무관합니다. 제75조는 소비자단체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75조 1, 2호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사건에 관한 소송은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제75조의 판결확정에 대하여 제소단체가 판결이 주된 내용, 사업자의 명칭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공개가 원칙이며 판결의 당사자에게는 원본과 똑같은 정본이 제공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헌법 제109조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확정된 기록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의 일반 공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2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0) 단체소송의 허가결정과 보전처분

소비자기본법 제76조는 현행 단체소송에 허가절차가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허가절차 전에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정리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허가절차를 없애버린다면 이 규정은 삭제만 하면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에 관한 조문으로 충분한 것이지 민사소송법의 특수절차에 관한 소비자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 제소단체에 대한 지원

단체소송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여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은 당연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기존의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는 개별 지방자치 단체나 관련 행정청에서 비용을 지원하느냐의 여부도 소비자기본법에 담을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기본법 제4절의 소비자단체소송 부분은 일반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절차법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지원 부분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4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개정안은 소비자 기본법 제4절의 소비자단체소송 부분을 실체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억울한 소비자의 구제를 어떻게든 해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은 염연히 소송이므로 기존의 소송절차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입법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민사소송법 절차의 특수절차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 못지않게 왜 그러한 특수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기존 민사소송절차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익숙한 법관이나 변호사,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그 절차상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고 새로운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誘因)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독일식의 단체소송제도를 만든다거나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추가한다거나 일본식의 논의를 법규정으로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능하지 않는 절차나 예외적인 절차는 단순히 기능하지 않는 것을 넘어 기존의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실체적인 권리구제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인식은 절차법에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조정합의의 자율성을 주면서 동시에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과 같은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치 둑근삼각형처럼 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양립가능하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제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왜 논리모순이며 현실의 분쟁해결에 더욱 부담을 주는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형태의 집단소송시스템을 도입한 우리나라가 왜 집단분쟁해결에 그 어느 나라보다 비효율적인 절차낭비를 반복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2017. 12. 18.)

[토론 4]

토 론

최명배 서기관(국회 입법조사처)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최정배

고형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개정방안」의 주제의식과 시의성에 대하여 깊게 공감하며 몇 가지 의견을 덧붙여볼까 합니다.

첫째, 제소단체와 관련하여 과도한 제소단체 요건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보다 소비자단체의 회원 수 입증 등 원고적격의 문제가 더욱 쟁점이 되고 있고 단체소송에 있어서 사업자의 공방수단 역시도 이에 집중되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과정의 논의를 살펴보면 단체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었던 점이 남소(濫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허가제도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수 인증제 등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거나 행정적 확인을 거친 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회원 수 입증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는 현행법이 일부 경제단체에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역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령 및 공정위 고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전경련, 무역협회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경제단체는 정관이나 설립목적이 주로 회원사의 지원, 경제질서 건전화 등 실제 소비자권익보호와는 거리가 있고, 실제 단체소송의 발굴 실적도 없을뿐더러 이를 위한 인력이나 조직을 따로 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 조항과도 연계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내용의 제한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 역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구내용을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위해물품의 수거 등 소위 리콜을 소송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효과적으로 생각되나, 법원의 원상회복 명령과 현재 각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각 행정기관의 리콜 명령과의 관계 정립 역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 소위 해외직구의 경우에 국내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깊게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Register 단계에서 동의하게 되는 사용 약관(Terms and Conditions)에서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재판관할 조항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국제사법」 등 국내법의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법의 역외 적용의 한계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재판관할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주요 해외 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 민원 건수 등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간접적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피해소비자의 요청권과 관련하여, 제소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가 제소권을 보유하는 단체에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구받은 단체가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준비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이 소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 역시 소비자단체가 지고 있는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은 소비자단체가 이에 응하도록 강제할 경우 소비자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강제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 불만 사례의 제기 수준의 의미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다양한 논의가 향후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에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5]

토 론

남동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NOTE

NOTE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NOTE

NOTE
